

#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

## 휴양시설 운영지침

2022년 5월 18일 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에서 위탁계약 운영 중인 입차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관리)** 노동조합 사무처는 휴양시설 위탁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임기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이용자격)** 휴양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의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는 조합원으로 한다.

**제4조(휴양시설운영)** 매년 의료지부 정기대의원대회 후 연간 사업계획에 준하여 운영한다.

**제5조(이용수칙)** ①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휴양시설은 숙박시설에 한하며, 휴양시설별로 규정된 이용요금 및 제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② 휴양시설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는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,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③ 휴양시설 이용은 타인에게 일체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.

④ 휴양시설에 선발된 조합원이 사전 통보 없이 미사용 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해당 시설 단가 기준(2박 합계) 50% 금액을 본부지부로 이체 납부하고, 본부지부에서는 쟁의비로 적립한다.

⑤ 노동조합이 업체와 협의한 무료 휴양시설에 선발된 조합원이 사전 통보 없이 미사용 시 다른 휴양시설과 동일하게 해당 시설 단가 기준(2박 합계) 50% 금액을 본부지부로 이체 납부하고, 본부지부에서는 쟁의비로 적립한다.

**제6조(이용제한)** ① 휴양시설에 선발된 조합원은 선발년도부터 향후 3년간 선발에서 제외한다.

② 조합 및 위탁업체에 사전 통보 없이 미사용 시 사유발생년도부터 향후 3년간 선발에서 제외한다.

③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친 분양포기분에 대해서는 선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**제7조(이용자 선발)** ① 휴양시설 이용일은 1인당 2박을 기본으로 한다.

② 휴양시설 신청 및 선발은 위탁업체의 전용홈페이지로 접속하여 3지방까지 신청가능하며, 위탁업체에서 추첨한다.

**제8조(예약 취소)** 예약 취소는 사용일 기준 7일 이전에 취소가 가능하며, 7일이 남지 않았을 때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, 사전 통보 후 미사용 하더라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환급되지 않는다.

**제9조(이용료 납부)** 휴양시설 숙박료와 부대시설 이용료는 이용자가 해당 휴양시설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다.

### 부 칙

이 지침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